강 남 구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부과 취소

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[부과취소 및 변경]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 세 자 : ***
2. 부과취소사유 : 세무서 이중통보(기과세/2015년10월수시분 521-100179번)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104,319,840	104,319,840	0

붙임 1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부과취소 결의결정서. 1부
2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.
3. 국세청 착오통보자료 1부. 끝.

주무관 홍유기 지방소득세2팀장 윤미라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전결 12/18 김용운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43917 ( ) 접수 ( 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704 /전송 02)3423-8834 / gong02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